##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51

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서영교·조인철·박지혜

이해식 • 허 영 • 박지원

박상혁 • 진선미 • 박희승

임오경 · 임광현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업무에 보호자 교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. 최근 조사(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, 2022)에 따르면 영유아·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약 94.2%가 "부모교육이 필요하다"고 답하는 등 부모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상황임. 그러나각 지자체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의 보호자 교육은 교원 연수 등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함.

이에 보호자의 영유아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"유아 체험교육 등을"을 "유아 체험교육, 보호자 교육 등을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유아교육진흥원) ① 국가	제6조(유아교육진흥원) ①
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	
관한 연구와 정보제공, 프로그	
램 및 교재 개발, 유치원교원	
연수 및 평가, 유아 체험교육	<u>유</u> 아 체험교육,
<u>등을</u>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	<u>보호자 교육 등을</u>
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	
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	
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